

[상품형태모방] 상품형태의 모방제품 (dead copy)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제 18 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 조제 1 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 구법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자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목을 삭제함으로써 제 18 조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함.
따라서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제 18 조 제 3 항의 형사처벌 대상.

제 19 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8 조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멘트

종래에는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 18 조 벌칙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법 해당조항은 **2017. 7. 18.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기술탈취, 부정경쟁, 영업비밀, 손해배상, 형사고소, 민사소송,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